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성공회대학교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에 설치된 장학금의 지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기준 및 장학금 지급의 절차와 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기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 본 대학원의 장학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장학금에 관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장학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제4조(장학금 종류 및 목적)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비감면장학금 : 입학, 학과배정, 추천, 재직자, 특별, MAINS(일반대학원 아시아비정부기구학 전공), 외국인 및 재외국민, 복지 등 학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비를 감면해주는 장학금
2. 대가성장학금 : 근로, 기여 등 학업과 연관성 있는 활동에 대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
3. 생활보조장학금 : 학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생활비 지원 장학금

[전문개정 2016.11.16.] <개정 2019.08.28>

제5조(자격제한)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은 당해 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6.11.16.]

제6조(신청기간 및 방법)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장학금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기준) ①학생복지처장은 신청대상자, 각 대학원장 및 주임교수로부터 신청, 추천된 장학금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여부, 성적 및 기타 결격사유를 검토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장학금은 수업연한 내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장학금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전문개정 2016.11.16.]

제8조(장학생 취소) 학생복지처장은 장학생으로 확정된 이후라도 다음과 같이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할 명백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1.16.]

1. 평균 "B"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2. 등록하지 않은 경우
3. 본인이 포기한 경우
4. 학비감면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5. 휴학한 경우(등록한 학기에 휴학한 경우는 해당학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6. 기타 부득이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지급방법) 학비감면장학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학생의 지급 시점은 해당학생의 등록완료 후로 한다. <개정 2016.11.16.>

제10조(장학금 총액) 학생 1인당 학비감면장학금의 총액은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제11조(교외장학금 관리) 교외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장학생의 추천을 의뢰하였거나, 장학금을 기탁하여 왔을 경우에는 추천의뢰자의 제시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학생복지처장이 장학생을 추천하거나 선정한다. [전문개정 2016.11.16. 2022.04.18]

1. 교외기관이 장학생 선발·추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계 곤란, 성적 우수 등 선발·추천 기준을 포함한 본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추천할 수 있다.

2. 교외기관이 장학생 선발·추천 기준을 정하였을 경우 선발·추천기준을 충족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그 기준이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불법·부당하거나 특정인을 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기준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필요시 기준을 재요청할 수 있다.

2의 1. 교외기관이 특정학생을 지정하여 선발·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① 교외기관의 선발·추천 기준, 방법 및 절차가 명시된 자료 ② 교외기관과 특정학생 간 이해관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교외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지정한 특정학생이 대학의 장학생 선발·추천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관련자료를 재요청하거나, 선발·추천을 거부할 수 있다.

3. 대학원에 직접 기탁되었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주임교수는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대학원에 직접 기탁된 기부장학금의 경우 해당 대학원은 별도의 내규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장학금이중수혜금지) <개정 2013.10.23.><삭제 2016.11.16.>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16.>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9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13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7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6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전면 개정하여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11학년도 입학 장학금은 본 규정의 소급적용을 받는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7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25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9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8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9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3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2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15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3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8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9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23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5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8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05.31., 2018.02.21., 2018.04.11., 2019.05.15., 2019.7.31., 2019.08.28., 2020.08.19., 2020.09.23., 2021.08.25., 2021.10.20., 2022.04.18>

학비감면장학금 지급기준

1. 입학 장학금

구분	수혜금액	지급기준	선발 대상	수혜 기간
입학(추천)	수업료의 40%	1) 주임교수 또는 면접위원의 추천을 받은 신입학생 중 대학원위원회가 승인한 자.(입학생인원의 50%) 2) 입학 후 첫 학기 지급 3) 일반대학원 신학과 석사과정 입학(추천)장학금은(1명)은 2017학년도 전기 선발(입학)자까지 지급한다.	일반대학원 사회학과(석,박사)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석,박사) 일반대학원 국제문화연구학과(석,박사) 신학대학원 (교회음악과정)	1학기
입학(본교출신)	입학금 100%	1) 본교 졸업생(학부, 석사, 박사) 중 본교 대학원 진학자 2) 본교 재학생(석사, 박사) 중 본교 대학원으로 편입학한 자(2019학년도 후기입학자부터 적용)	모든 대학원	1학기

2. 학과배정 장학금

구분	수혜금액	지급기준	선발 대상	수혜 기간
주임교수 추천	일정액	1)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	일반대학원 사회학과(석, 박사)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석, 박사) 일반대학원 국제문화연구학과(석, 박사) 일반대학원 신학과(석, 박사)	1학기
연구조교	일정액	1) 본교 교원의 연구와 교수에 참여하여 도움을 준 자 2) 본교 조교임용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문화대학원 신학대학원 신학과(단, 생태영성과정 제외) 시민평화대학원(NGO대학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사회적경제대학원	1학기

3. 추천 장학금

구분	수혜금액	지급기준	선발 대상	수혜 기간
대학원장 추천	수업료 범위 내	1)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	모든 대학원	1학기
총장 추천 / 학생복지처장 추천	수업료 범위 내	1) 총장 또는 학생복지처장이 추천한 자	모든 대학원	1학기

4. 재직자 장학금(장학금 신청 기준일자 재직 확인)

구분	수혜금액	지급기준	선발 대상	수혜 기간
재직자 (성직자 및 수도자)	수업료의 30%	1) 일반대학원 신학과 석,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기독교 성직자 또는 수도자(전임 전도사 포함) 2) 신학대학원 성서전문가과정, 교역과정, 생태영성과정에 재학 중인 기독교 성직자 및 수도자(전임 전도사, 교단장이 임명한 평신도 교역자 포함) 3) 수혜대상자였으나 장학금 수혜기간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 수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4) 수혜대상자는 재직상황에 변동이 있을시 학생복지처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한다.	일반대학원 신학과(석, 박사) 신학대학원 신학과 (성서전문가과정, 교역과정, 생태영성과정)	수업 연한내
재직자(단체상근자)	수업료의 40%	1) 대학원별 지급기준 (1) NGO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근자로서 시민평화대학원(NGO대학원)에 입학한 자 (2) 사회복지시설·시민단체·공공기관 내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근자로서 시민사회복지대학원에 입학한 자 (3) 문화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상근자 및 그에 준하는 전문적 문화활동가로서 문화대학원에 입학한 자 (4) 협동조합·마을공동체·도시재생 등 사회적경제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근자로서 사회적경제대학원에 입학한 자 (5) 민주시민교육단체의 상근자로서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자. 단 현직 초·중등 교원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6) 기독교 환경운동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근자로서 신학대학원 생태영성과정에 입학한 자 2) 1,2학기 연속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1,2학기 연속지급 (단, 1학기만 등록하고 2학	시민평화대학원(NGO대학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문화대학원 사회적경제대학원 교육대학원 신학대학원(생태영성과정)	2학기

구분	수혜금액	지급기준	선발 대상	수혜 기간
		<p>기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학기만 지급)</p> <p>3) 재직자(단체상근자) 장학금의 수혜대상자는 신입학 지원시 제출한 재직증빙을 근거로 주임교수 또는 면접위원이 추천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p> <p>4) 수혜대상자였으나 장학금 수혜기간 중에 퇴직 또는 소속대학원 전공과 무관한 분야로 이직한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 수혜대상자에서 제외한다.</p> <p>5) 수혜대상자는 재직상황에 변동이 있을시 학생복지처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한다.</p>		
재직자(교원)	수업료의 30%	<p>1)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현직 교원</p> <p>2) 수혜대상자였으나 장학금 수혜기간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 수혜대상자에서 제외한다.</p> <p>3) 수혜대상자는 재직상황에 변동이 있을시 학생복지처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한다.</p>	교육대학원	수업연 한내
재직자(교직원)	수업료의 70%	<p>1) 본교에 재직하는 *교직원 *교직원은 전임교원과 정규직 직원으로 한다</p> <p>2) 수혜대상자였으나 장학금 수혜기간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 수혜대상자에서 제외한다.</p> <p>3) 수혜대상자는 재직상황에 변동이 있을시 학생복지처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한다.</p>	모든 대학원	수업연 한내
재직자(성공회대학교 기관 상근자)	수업료의 50%	<p>1)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성베드로학교의 교원과 직원</p> <p>2)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구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직원.(단, 위탁운영이 종료되는 경우 종료된 시점 이후 입학생은 지급하지 않는다.)</p> <p>3) 수혜대상자였으나 장학금 수혜기간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 수혜대상자에서 제외한다.</p> <p>4) 수혜대상자는 재직상황에 변동이 있을시 학생복지처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한다.</p>	모든 대학원	수업연 한내
재직자(기타)	수업료의 30%이내	<p>1) 공공기관의 재직자로 대학원 위원회가 승인한 자.(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관공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p> <p>2) 재학 중 1회(한 학기) 지급</p> <p>3) 타 재직자장학금을 수혜한 적 있는 경우 재직자(기타)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다.(2022학년도부터 적용)</p>	모든 대학원	1학기

*재직자(시민단체활동가) 장학금 삭제 <2018.04.11.>

*재직자(기타) 장학금 지급기준 3) 신설 <2021.10.21.>

5. 특별 장학금

구분	수혜금액	지급기준	선발 대상	수혜 기간
가족	500,000원	1) 본교에 형제자매, 부부, 부모자녀가 2인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모든 대학원	수업연한내
간부	수업료의 50%	1)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 자치기구의 재규정에 따라 선출, 임명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모든 대학원	1학기
NGO해외연수	수업료의 85%	1) 시민평화대학원 시민정책학전공(NGO대학원 비정부기구학전공) 소속 재학생으로 NGO해외연수 후 결과 보고서를 내고 성적부여를 받은 자 2) 최대 수혜인원은 한 학기당 1명으로 함	시민평화대학원 시민정책학전공(NGO대학원 비정부기구학전공)	1학기
신학전문대학원 장학금(석사)	일정액	1) 2015학년도부터 신학전문대학원이 일반대학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등록금 증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신학전문대학원(석사)	수업연한내
신학전문대학원 장학금(박사)	일정액	1) 2015학년도부터 신학전문대학원이 일반대학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등록금 증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신학전문대학원(박사)	수업연한내
문화대학원(석사)	수업료 범위 내	1) 2010학년도부터 문화대학원의 수업연한 단축으로 인하여 200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의 5학기에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장학금 지급액은 <문화대학원 수업연한 단축 소급적용 요청에 대한 처리 원칙>에 따른다.	문화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석사)	1학기

6. MAINS(일반대학원 아시아비정부기구학전공)장학금

구분	수혜금액	지급기준	선발 대상	수혜 기간
MAINS(내국인)	수업료의 40%	1) 일반대학원 아시아비정부기구학전공에 재학 중인 내국인	일반대학원 아시아비정부기구학전공	3학기
MAINS 조교(내국인)	수업료의 30%	1) 일반대학원 아시아비정부기구학전공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의 조교 내국인(1명)	일반대학원 아시아비정부기구학전공	3학기
MAINS 4학기(외국인유학생)	수업료의 100%	1) 일반대학원 아시아비정부기구학전공에 재학 중인 4학기 차 외국인 유학생	일반대학원 아시아비정부기구학전공	1학기
MAINS 4학기(내국인)	수업료 범위 내	1) 일반대학원 아시아비정부기구학전공에 재학 중인 4학기 차 내국인 2) 논문 등록비를 제외한 수업료 전액	일반대학원 아시아비정부기구학전공	1학기

7.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장학금

구분	수혜금액	지급기준	선발 대상	수혜 기간
외국인 및 재외국민추천	수업료의 50%	1) 본교 대학원에 정원으로 입학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단, 2016학년도까지 입학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정원 내, 외의 구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삭제<2013.09.25.> 3)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경우 수업연한 내 장학혜택 유지	모든 대학원	수업연한 내
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외국인	수업료의 50% 입학금 100%	1) 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으로서 주임교수의 특별추천을 받은 자 2)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1명)	수업연한 내

8. 복지장학금

구분	수혜금액	지급기준	선발 대상	수혜 기간
나눔(대학원)	수업료의 10~20%	경제사정이 곤란한 장애학생 중에 장애 정도에 따라 선발하여 지급한다.	모든 대학원	수업연한 내
특별 (코로나19)	수업료 범위 내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부담 완화 및 학업 장려를 위해 재학생 중에 선발하여 지급한다.	모든 대학원	-

[별표 2] <개정 2018.02.21., 2020.09.23.>

대가성 및 생활보조 장학금 지급 기준

1. 근로 장학금

구분	수혜금액	지급기준	선발 대상	수혜 기간
행정조교	일정액	1) 교무처, 중앙도서관 등 교내 행정부서의 행정조교로 선발된 자(논문학기 등록 수료생 포함) 2) 본교 조교임용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모든 대학원	1학기

2. 기여 장학금

구분	수혜금액	지급기준	선발 대상	수혜 기간
공로	일정액	1) 대학 발전에 기여한 재학 중인 대학원생	모든 대학원	1학기

3. 생활보조 장학금

구분	수혜금액	지급기준	선발 대상	수혜 기간
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외국인 생활보조	일정액	1) 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으로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1명) 2) 수업연한 내 국내체류 재학 시 지급 3)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	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1명)	수업 연한 내